

|                 |
|-----------------|
| 제338회 임시회       |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
| 2023. 3. 14.(화) |

#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94        |
| 제출일자 | 2023.2.24. |
| 회부일자 | 2023.2.28. |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16명

## 2.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재정지원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제2조)
- 사.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3조)

## 4.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 7. 검토의견

###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표시를 활용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에 대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여 제작·배부하고 있고,

- 특히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가 신설('23.7.4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표시를 활용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로교통법> (2023.1.3.신설, 2023.7.4. 시행)**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등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 안 제2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의 안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지원 등은 금번 제정하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부칙 안 제3조는 이 조례 제정으로 변경되는 「경상북도 교

통안전 증진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제5호의 개정·삭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

## □ 종합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비례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지난 10년간(2012~2021)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sup>1)</sup>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2년 15,190건에서 2021년 31,841건 110% 증가하였고, 경북은 2012년 1,426건에서 2021년 2,458건으로 72% 증가하였음. 2022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면허를 소지한 고령운전자는 285,290명으로 경북 전체 고령인구 618,275명의 46%에 달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시 판단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 관련 법령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시행중에 있음.<sup>2)</sup>

1)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 12조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예방사업, 실태조사, 교통비 등 재정지원 취소 및 반환 규정 등을 추가한 단일 조례로 제정한 것임.

####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고령운전자 표시를 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시는 도로교통공단의 표시를 사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운전면허

2)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
|--------------------------------|----------------------|
|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 반납의 효과를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취지, 조문 내용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